

## 도시고속도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

도시고속도로 원인자부담금 납부 통지에 있어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※ 본 공시송달은 2024. 11. 30. 0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
2024년 11월 15일  
부산시설공단 이사장



1. 건 명: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납부통지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4. 11. 15.~2024. 11. 30.(15일간)
3. 납부자 및 납부금액
  - 납 부 자: 유○탁
  - 주 소: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293번길 17-3
  - 근거법령: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및 지방세기본법
  - 내 용 (체납으로 인한 독촉)

원인자부담금	가산금	합 계	납부기한
6,495,280원	237,710원	6,732,990원	2024. 11. 27.

4. 유의사항
  - 납부자께서는 부산시설공단 도로처 사무실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3)
  - 만약,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가 가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,
  -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.
  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시설공단 도로처 터널관리팀(☎ 051-790-701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